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석면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관리지역 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에 따른 시·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같은 법 제15조는 도지사가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0조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로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연발생석면 파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안 제7조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및 제9조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대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4. 6.~'20. 4. 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과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44,948동('20. 1월말 기준)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여 2024년도까지 철거 계획 중인 건축물 수가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으므로,
-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매칭한 지방비도 증액 투자하여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시점을 앞당겨 1군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